

검토보고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획예산과

(2011. 12. 2)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명 금 길]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1년 11월 17일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1년 11월 22일

4.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은 마포의 미래성장을 위한 정책결정 및 구정 현안에 대하여 지역원로와 전문가의 건의·자문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과의 소통과 통합의 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 >

- (1) 안 제2조에서는 자문단의 기능으로서 마포구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정책 결정에 관한 건의·자문, 구정의 장·단기 발전 계획에 관한 건의·자문,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 개선에 관한 건의·자문,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건의·자문 등을 명시
- (2) 안 제3조에서는 지역원로회의와 전문가회의로 구분하여 운영 하되 필요시에는 전체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각 회의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지역원로회의는 25명 이내, 전문가회의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 회의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또한 자문단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지역원로회의의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전문가회의 위원은 자치 행정, 복지, 경제, 관광,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함

(3)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로서 각 회의의 위원장은 각각 회의를 대표하며 소관 회의의 직무를 총괄하되, 전체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원로회의의 위원장이 전체 회의의 의장이 되도록 함

또한 각 회의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4) 안 제5조에서는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함

(5) 안 제7조에서는 가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마다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팀장으로 하도록 함

(6) 안 제8조에서는 각 회의의 위원장이 각 회의의 의장이 되며 각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임시회는 구청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7) 안 제10조에서는 자문단은 건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는 등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함

- (8) 제11조에서는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안 제10조에 따라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9) 제1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검토의견 >

-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마포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원로 및
전문가의 건의·자문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
미래성장자문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확보는 물론 입법
예고 및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책자문의 전문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자문단 내에 경제, 복지
문화, 교통 또는 국별 위원회 등과 같은 분야별 분과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욱 능률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사료됨